

【중앙회 보수교육비 환불 기준】

◎ 사전등록비

- 교육일 1일 전까지 요청 시 전액 환불
 - * 교육 전일이 공휴일·토요일인 경우, 이메일(isom5000@daum.net)로 환불 요청
- 이후 환불불가(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제외 후 환불)
-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환불요청 시 전액 환불
(교육일 이후 30일 이내)
 - ▶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

사유	제출서류
1. 천재지변 또는 보수교육기관의 귀책사유로 교육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	-
2. 본인의 군입대	입영통지서
3. 교육일 이전 본인 및 가족의 사망 (교육일 포함 7일)	가족관계증명서류, 사망진단서
4. 본인, 형제, 자매의 결혼(교육일 당일)	가족관계증명서류, 결혼증명서류
5. 본인의 사고,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(교육일 당일)	입퇴원증명서, 진단서
6. 이 외에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없다고 보수교육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	개별안내
*3호의 사유 중 인정되는 '가족'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	
-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

◎ 간접비

- 교육 수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비 납부 시(2년 미만 체납 시) 환불 가능